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4692   |
| 의 퇴 인 | 민병덕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4.12.9 |
| 추계번호  | 23B4355   |

#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택시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하고, 낡은택시 교체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9억원, 2030년 328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1,565억원(연평균 313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재정지원(우수사업자 경영서비스평가 등)<br>(안 제7조제1항제4호의4 신설) | 1    | —    | 1    | —    | 1    | 3     | 0.6 |
| 재정지원(낡은택시 교체사업)<br>(안 제7조제1항제4호의6 신설)       | 298  | 305  | 312  | 319  | 327  | 1,562 | 312 |
| 합계<br>(지방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9  | 305  | 313  | 319  | 328  | 1,565 | 313 |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추계하지 않은 재정수반요인의 비용이 포함될 경우 총재정소요액은 본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조·항(조제목)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안 제7조<br>(재정지원) | <p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<u>택시운수종사자단체</u>(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(제1항)</p> <p>4의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3호<sup>1)</sup>에 따른 수요응답형 택시의 여객운송사업</p> <p>4의4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0조<sup>2)</sup>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</p> | 재량규정 |

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| <p>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 사업</p> <p>4의5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제1항<sup>3)</sup>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의 정착 지원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공공형 지원 사업</p> <p>4의6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<sup>4)</sup>에 따른 택시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</p> <p>4의7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2항제8호<sup>5)</sup>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</p> |    |

1) 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

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·운행시간·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
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

나. 신도시,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다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) 제20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)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(이하 "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"라 한다)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(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)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,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·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3) 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(이하 "운송수입금"이라 한다)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(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

2.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

3.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(주유비, 세차비, 차량수리비,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)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

4.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(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)할 것

5.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

4) 제50조(재정 지원)

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(제2호 생략)

3.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(이하 생략)

5) 제50조(재정 지원)

②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<br>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    | 안 제7조<br>제1항<br>(재정지원) | 제4호의3 신설<br>(수요응답형 택시의<br>여객운송사업)         | ×    | • (제3호)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,<br>규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소요비용을 합리<br>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호의4 신설<br>(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<br>상 및 재정지원 사업) | ○    | • (추계)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호의5 신설<br>(공공형지원사업)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• (제3호) 전국 단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<br>설정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<br>데 한계가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호의6 신설<br>(택시고급화 및 낡은<br>택시 교체사업)       | ○    | • (추계)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호의7 신설<br>(종사자 처우개선)                    | —    | • (미대상)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수종사자 처우개<br>선 관련 사업이 기 실시되고 있어 비용추계 미대<br>상 사유에 해당함(관련 자료는 [참고자료]에서<br>확 인할 수 있음)<br>• 택시 감차에 대한 국가보상 사업도 기 실시 중([참<br>고자료]에서 확인)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(안 제7조제1항제4호의4 신설)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함

- 유사사례: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운영자(버스·지하철·터미널 등)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사업(2024년 예산 2억원)

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8.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(안 제7조제1항제4호의6 신설) 개정안에 따른 택시고급화 및 낮은 택시 교체사업 관련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함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<sup>6)</sup>
-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7조제1항제4의4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안 제7조제1항제4호의4 신설) 시·도지사가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됨
  - 개정안에 따른 우수사업자 포상 및 재정지원 사업은 현재 대중교통 운영자(버스·지하철·터미널)에 대해 2년 주기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사업비를 추계함
    - － 국토교통부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자(버스·지하철·터미널 등)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<sup>7)</sup> 2년 주기로 2억원의 연구용역 사업비 발생
  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택시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경우 2년 주기로 연구용역 사업비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6)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2024. 11)

|         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2.5  | 2.1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

7) 별도의 포상 및 재정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
[표 2] 경영 및 서비스 평가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 사업<br>(안 제7조제1항제4호의4 신설) | 100  | -    | 100  | -    | 100  | 300 | 60  |

□ (안 제7조제1항제4호의6 신설) 시·도지사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택시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함

- 현재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,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택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(대당 100~150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)<sup>8)</sup>(2022~2023년 평균 43억원) 개정안에 따른 낡은택시 교체 사업비에서 현재 지원 중인 사업비는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할 수 있음
- 환경부는 ‘무공해차 보급사업’을 통해 전기택시 구매시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(2024년 기준 대당 400만원)<sup>9)</sup>, 낡은택시 교체에 따라 신규 택시 구매수량 중 전기택시로 구매하게 될 물량은 사업비 보조를 받게 될 것이므로, 본 개정안의 사업대상에서 제외함
  - 2022년 이후 전기택시 보급 수준은 전체 신규 등록택시의 평균 29.3%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, 매년 동 수준만큼은 제외하고 낡은택시 교체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
8)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9)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(2024년)

|           | 2022      | 2023      | 2024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계        | 2,182,761 | 2,565,224 | 2,398,754 |
| ·전기자동차 보급 | 1,719,000 | 1,918,000 | 1,764,000 |
| ·수소차 보급   | 454,505   | 633,400   | 620,850   |
| ·무공해차 운영비 | 9,256     | 13,824    | 13,904    |

[표 3] 전기택시 공급현황: 2019~2024년

(단위: 대)

| 구분      | 2019년  | 2020년  | 2021년  | 2022년  | 2023년  | 2024년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전기택시    | 1,034  | 904    | 4,995  | 15,763 | 12,553 | 4,958  |
| 전체 신규택시 | 39,549 | 34,147 | 34,989 | 41,448 | 35,787 | 33,317 |

주: 2024년 11월 기준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국토교통부는 택시의 대부분이 중형차량<sup>10)</sup>으로 운행되고 있고, 정기검사를 통과할 경우 기본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운행할 수 있는 등을 감안하여 택시의 교체주기는 평균 차령 8년으로 가정하고 있어, 교체주기는 8년으로 가정함
- 현재 택시별 차령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정보가 부

10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[별표 2]

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(제40조제1항 관련)

1. 차령

| 차종    | 사업의 구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령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승용자동차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              | 개인택시(경형·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택시(배기량 2,400cc 미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택시(배기량 2,400cc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택시[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,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(이하 이 호에서 "환경친화적자동차"라 한다)] | 9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택시(경형·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년 6개월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택시(배기량 2,400cc 미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택시(배기량 2,400cc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택시(환경친화적자동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년     |
|       | 자동차대여사업용                  | 경형·소형·중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년     |
|       |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            | 경형·소형·중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   |
|       | 플랫폼운송사업용                  | 배기량 2,400cc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기량 2,400cc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년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친화적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년     |
| 승합자동차 |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년    |
|       | 그 밖의 사업용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년     |
| 특수자동차 | 자동차대여사업용                  | 캠핑용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년     |

비고

가.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(이하 "기본차령"이라 한다)의 만료 2개월 전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.

재하므로, 본 추계에서는 현행 택시면허대수의 차량(24.8만대)이 8년 동안  
균분하여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4] 택시면허대수 현황: 2023년

(단위: 대)

|        | 일반택시 면허대수 | 개인택시 면허대수 | 합계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택시면허대수 | 83,355    | 164,582   | 247,937 |

자료: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(2023.12. 기준)

-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택시 교체사업 지원비용은 100~15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라 시·도가 지원하게 되는 비용도 150만원(대당)으로 가정함
  - 보조금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- 2023년 기준 등록된 택시(247,937대)가 향후 8년의 차량기간 동안 균등하게 교체된다고 가정할 경우, 매년 30,992대가 신규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인 전기택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 사업비를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할 수 있음
  - 추가재정소요 = {(교체대상 차량수 - 전기택시(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)) × 보조금(150만원)} - 현재 지원중인 지방자치단체 노후택시 교체 평균사업비
    - 교체대상 차량수 = 30,992대(=247,937÷8년)
    - 전기택시 교체차량 = 9,090대(=30,992대×29.3%)
    - 지방자치단체 노후택시 교체 평균사업비 = 43억 7,500만원
- 이상의 가정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낡은택시에 대한 교체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5] 낚은택시 교체비용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신규 교체택시(a)                       | 30,992 | 30,992 | 30,992 | 30,992 | 30,992 | 154,960 |
| 전기택시(b)                          | 9,090  | 9,090  | 9,090  | 9,090  | 9,090  | 45,449  |
| 추계대상 택시<br>( $A=a-b$ , 대)        | 21,902 | 21,902 | 21,902 | 21,902 | 21,902 | 109,511 |
| 지원 단가<br>(B, 백만원)                | 1.56   | 1.59   | 1.63   | 1.66   | 1.69   | —       |
| 택시 교체비용<br>( $C=A \times B$ )    | 34,214 | 34,898 | 35,596 | 36,308 | 37,034 | 178,051 |
| 일부 지방자치단체<br>노후택시 교체<br>평균사업비(D) | 4,375  | 4,375  | 4,375  | 4,375  | 4,375  | 21,875  |
| 추가재정소요<br>( $C-D$ )              | 29,839 | 30,523 | 31,221 | 31,933 | 32,658 | 156,175 |

주: 전기택시 수요량은 추정하기 곤란하여 2022~2024년 기간 동안 전체 신규택시 중 전기택시 평균 비중을 적용하여 추산한 값으로, 향후 전기택시 수요량 변화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## 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추계하지 않은 재정수반요인의 비용이 포함될 경우 총재정소요액은 본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배아형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 1] 택시 감차보상 사업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택시감차보상
- 지원대상 : 택시운송사업자(개인·법인)
- 사업목적 : 택시업계의 근본문제인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보상 지원
- 법적근거: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11조
- 사업기간 : 2015년 ~ 계속

### □ 연도별 예산액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  | 2024년  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예산액 | 4,095 | 5,197 | 4,677.3 | 4,208.9 |

[참고자료 2]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후택시 대폐차 교체 지원사업 현황

국토교통부 취합자료

(단위: 백만원)

| 시도    | 시군구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 | 20    | 21  | 22    | 23   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인천광역시 |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신차 구매 보조금 | 택시의 고급화, 안전성<br>강화를 위한 노후택시<br>교체비 보조<br>(대당150만원 지원) | -   | -     | -   | 3,138 | 1,500 |
| 광주광역시 |     | 일반택시 선진화<br>사업 지원     | 법인택시 신차 구<br>입 비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25 | 1,088 | -   | -     | -     |
| 광주광역시 |     | 개인택시 선진화<br>사업 지원     | 개인택시 신차 구<br>입 비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42 | 450   | 518 | 600   | 600   |
| 전라남도  |    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0   | 200   | 200   |
|       | 목포시 | 노후택시 교체 지원            | 노후택시 교체 지<br>원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15  | 50    | 48    |
|       | 여수시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16  | 16    | 45    |
|       | 순천시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30  | 50    | 7     |
|       | 나주시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5   | 25    | 20    |
|       | 광양시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90  | 25    | 13    |
|       | 구례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1   | 10    | 3     |
|       | 보성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-   | 10    | 6     |
|       | 장흥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-   | 5     | 4     |
|       | 강진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| 1   | 3     | 5     |

| 시도   | 시군구 | 사업명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| 20 | 21 | 22 | 23  |
|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
|      | 해남군 | 노후택시 교체 지원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4  | 15 | 10  |
|      | 영암군 | 노후택시 교체 지원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2  | 1  | 3   |
|      | 무안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1  | 3  | 8   |
|      | 함평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2  | 8   |
|      | 영광군 | 노후 택시 교체 지원 | 노후택시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2  | 3  | 4   |
|      | 장성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12 | 5   |
|      | 완도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4  | 4  | 4   |
|      | 진도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8  | 8  | 4   |
|      | 신안군 | 노후택시 교체 지원  | 노후택시 대폐차<br>시 신차 구입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6  | 3   |
| 경상북도 |    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| 대폐차예정인 택<br>시 교체비 150만<br>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-  | 450 |
|      | 김천시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| 노후된 택시의 조<br>기 교체를 유도하<br>여 택시이용객에<br>대한 서비스수준<br>향상 | -  | -  | -  | -  | 117 |
|      | 안동시 | 노후택시교체지원    | 기본차령 초과된<br>차량 교체시 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-  | 93  |
|      | 구미시 | 노후택시교체지원    | 기본차령 초과된<br>차량 교체시 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-  | 203 |
|      | 영주시 | 노후택시교체지원    | 기본차령 초과된<br>차량 교체시 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-  | 68  |
|      | 영천시 | 노후택시교체지원    | 기본차령 초과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-  | 59  |

| 시도 | 시군구 | 사업명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| 20 | 21 | 22 | 23 |
|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   |     |           | 차량 교체시 비용<br>일부 지원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| 상주시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대폐차 예정인 개인 및 일반택시에 차량구입비 일부 지원 | -  | -  | -  | -  | 59 |
|    | 경산시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45 |
|    | 군위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75 |
|    | 의성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18 |
|    | 청송군 | 노후택시 교체지원 | 노후택시 교체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-  | -  | -  | -  | 9  |
|    | 영양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 시<br>비용일부지원     | -  | -  | -  | -  | 50 |
|    | 영덕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17 |
|    | 청도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   |    |    |    | 15 |
|    | 고령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7  |
|    | 성주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11 |
|    | 예천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21 |
|    | 봉화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13 |
|    | 울진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18 |
|    | 울릉군 | 노후택시교체지원  | 기본차령 초과된 차량 교체시 비용 일부 지원       | -  | -  | -  | -  | 10 |

| 시도      | 시군구 | 사업명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   | 20    | 21    | 22    | 23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제주특별자치도 |     | 노후 택시 교체 사업(정액)    | 노후택시 대폐차 시 차량구입비 1,500천원/대 지원 | 650   | 670   | 350   | 406   | 300   |
|         |     | 장애인 운전 노후 택시 교체 사업 | 장애인 운전 노후 택시 교체 비용 50%지원      | -     | 223   | 84    | -     | -     |
| 합계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117 | 2,431 | 1,221 | 4,592 | 4,158 |

자료: 국토교통부가 취합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[참고자료 3] 전국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 지원사업 현황

| 시도   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도별 지원액(백만원)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          | 20    | 21    | 22    | 23    |
| 서울특별시 | 운수종사자 연수 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 | 운수종사자 교육 및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960        | 1,960 | 1,960 | 1,960 | 1,927 |
| 부산광역시 |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      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1년 미만 신규취업자 및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매월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| 1,194        | 1,186 | 1,163 | 2,369 | 2,640 |
| 부산광역시 | 택시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        |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및 단결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45           | 40    | 25    | 50    | 50    |
| 대구광역시 | 친절택시 활성화지원             | 친절택시 선정택시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1          | 185   | 171   | 161   | 105   |
| 대구광역시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선진교통 벤치마킹운영 | 국내·외 선진교통문화체험 및 벤치마킹 실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20    | 20    | 10    |
| 인천광역시 |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장려금 지원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장려금 지원 (4년이상근속시월10만원/인지원)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   | 928   | 2,000 |
| 광주광역시 | 택시운수종사자 행복채움           |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190   | 245   | 239   | 480   |
| 광주광역시 |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지원           | 모범운전원 대상 해외연수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| 0     | 0     | 0     | 0     |
| 대전광역시 |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        |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운전자 보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33          | 198   | 187   | 176   | 198   |
| 울산광역시 | 장기근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  | 장기근속,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342   | 700   | 250   |
| 울산광역시 | 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    |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통하여 운전자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           | 0     | 0     | 0     | 18    |
| 울산광역시 |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           | 교통안전 및 친절의식 함양 교육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유도                       | 37           | 37    | 37    | 37    | 37    |

| 시도    |     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도별 지원액(백만원)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          | 20    | 21    | 22     | 23     |
| 울산광역시 |      |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               | 택시 단정한 복장착용으로 서비스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         | 181   | 153   | 181    | 153    |
| 경기도   |      |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         | 노사 체육 기념행사 1회, 워크숍 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 | 50    | 0     | 0      | 68     |
| 경기도   |     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           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개인당 월 50,000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,283        | 9,253 | 7,870 | 10,251 | 10,251 |
| 경기도   |      | 택시쉼터 건립 지원                   |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쉼터 건립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120        | 1,950 | 886   | 700    | 0      |
| 경기도   |      | 택시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 지원            | 운수종사자의 현장 실습 위주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6          | 88    | 0     | 0      | 0      |
|       | 용인시  | 모범운전자회 활동 물품 지원              |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 활동용 피복 구입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   | 15     | 0      |
|       | 용인시  | 코로나19극복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지원    |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및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630   | 0     | 0      | 0      |
|       | 화성시  | 코로나19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지원      |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지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19    | 0     | 0      | 0      |
|       | 성남시  |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(2021)          | (2021년) 택시기사 (3,490명) 1인당 100천원 지원<br>(2022년) 택시기사(3,534명)1인당300천원지원 | 0            | 0     | 349   | 1,060  | 0      |
|       | 부천시  | 코로나19 관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| 코로나19관련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금<br>1인당40만원(8개사774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310   | 0     | 0      | 0      |
|       | 남양주시 | 택시쉼터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|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 및 소통공간을 위한 택시쉼터의 쾌적한 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25    | 25    | 25     | 26     |
|       | 시흥시  |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            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월 3만원 처우개선비 지급(시 자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   | 89     | 126    |
|       | 과주시  | 택시쉼터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| 택시쉼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| 10    | 11    | 11     | 14     |
|       | 군포시  | 택시쉼터 조성 (자체)                 |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, 자체 시비를 추가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37    | 30    | 339    | 0      |

| 시도      |    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도별 지원액(백만원) |       |    |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-|
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          | 20    | 21 | 22 | 23  |
|         | 군포시 | 택시쉽터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| 택시쉽터 운영시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 민간위탁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| 3  | 33  |
|         | 군포시 | 택시쉽터 자산취득비              | 택시쉽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가구, 운동기구등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| 67 | 0   |
|         | 군포시 | 군포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        |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 수입 감소로 고용지원금지원(인당3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22 | 0  | 0   |
|         | 구리시 | 택시쉽터 운영                 | 택시 쉽터 운영 관련 각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| 13    | 9  | 4  | 5   |
|         | 과천시 |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(코로나19지원) | · 법인택시운수종사자(코로나19)처우개선비지원<br>-21년 1인당 300,000원<br>-22년 1인당 500,000원 | 0            | 0     | 44 | 80 | 0   |
|         | 의왕시 | 택시쉽터 조성                 |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| 0  | 516 |
| 강원특별자치도 |     |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    |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관 내 체력단련기구 및 장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| -  | 13 | -   |
|         | 원주시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      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| 0  | 270 |
|         | 원주시 | 택시쉽터 조성                 |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| 0  | 297 |
|         | 동해시 |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안정지원       | 코로나19 대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62    | -  | -  | -   |
|         | 삼척시 | 택시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          | · 사업기간: 2021.8월~10월<br>· 내용: 택시운수종사자재복비지원(1인당150천원)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| 43 | -  | -   |
|         | 횡성군 |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       | 소득감소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 개선   | -            | -     | -  | -  | 94  |
| 충청북도    |     |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             | 코로나19 피해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2,630 | -  | -  | -   |
|         | 충주시 | 일반택시기사 처                | 일반택시기사 처우개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| -  | -  | 78  |

| 시도   | 사업명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| 연도별 지원액(백만원)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19           | 20    | 21  | 22    | 23    |
|      |              | 우개선지원금                | 원금 지급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 |
| 충청남도 |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| 개인택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       | 0            | 4,000 | 0   | 0     | 0     |
|      | 천안시          |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          | 4            | 0     | 0   | 4     | 8     |
|      | 천안시          | 택시운수종사자 행사지원          | 4            | 0     | 0   | 10    | 0     |
|      | 천안시          |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    | 0            | 0     | 0   | 2,000 | 2,800 |
|      | 홍성군          |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          | —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| —     | 10    |
| 전라북도 | 모범운전자 육성사업   | 모범운전자 교육등 지원          | 23           | 25    | —   | —     | 25    |
|      | 전주시          | 코로나19관련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|              | 1,094 |     |       |       |
|      | 군산시          | 군산 모범운전자 피복비 보조 지원    | 0            | 0     | 24  | 0     | 0     |
|      | 익산시          |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       | 30           | 27    | 27  | 27    | 27    |
|      | 남원시          | 모범운전자회 영호남 화합행사 지원    | 0            | 15    | 15  | 15    | 0     |
|      | 김제시          |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(택시) | —            | 105   | —   | —     | —     |
|      | 화순군          | 코로나19 택시 고추           | 0            | 71    | 0   | 0     | 0     |
| 경상북도 | 경주시         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   | 6            | 6     | 10  | 10    | 10    |
|      | 상주시          |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구입지원   | 6            | 0     | 0   | 0     | 0     |
| 경상남도 | 통영시          | 운수종사자 통신비 지원          | 13           | 68    | 57  | 57    | 57    |
|      | 통영시          | 법인택시 처우개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46    | 180 | 168   | 168   |

| 시도      |    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도별 지원액(백만원) |    |    |    |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          | 20 | 21 | 22 | 23 |
| 도       |     | 선비                    | 기사 소득감소분 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| 김해시 | 택시보호격벽 설치             | 택시내 보호격벽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7  | 23 | 61 | 0  |
|         | 의령군 | 택시보호격벽 설치             |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| 0  | 8  | 0  |
|         | 고성군 | 택시쉼터 조성               |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·회의 공간 마련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| 0  | 60 | 0  |
|         | 거창군 | 택시기사 대기실 설치 지원        |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기사 대기실 설치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| 0  | 22 | 0  |
| 제주특별자치도 |     | 택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|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교육 실시 | 87           | 67 | 75 | 80 | 80 |

자료: 국토교통부가 취합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